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71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추미애·소병훈·송옥주

김태년 • 윤호중 • 김병주

안태준 · 정을호 · 김용만

박용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 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·군·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하지만, 지역의 특색, 효율적인 행정 운영,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.

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, 위치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, 시·도교육감이 지방의회, 주민,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·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(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"명칭은 대통령령으"를 "명칭, 위치는 시·도의 조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지방의회, 주민,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	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		
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<u>명</u>		
<u>칭, 위치는 시·도의 조례</u>		
③ 교육감은 지방의회, 주민,		
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		
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시		
•도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		
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		
<u>야 한다.</u>		
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		
과 같음)		